

研究論文

1681년(숙종 7) 국왕 嘉禮시 揀擇處子 연구

이 미 선*

- | | |
|---------------------|--------|
| I. 머리말 | V. 맺음말 |
| II. 간택처자들의 출신배경 | <참고문헌> |
| III. 간택처자 추정 및 혼인여부 | <국문요약> |
| IV. 간택처자 배우자의 家格 | |

I. 머리말

조선시대 국왕의 嘉禮는 六禮의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육례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揀擇을 실시하게 된다. 왕실 내명부의 최고 여성이 왕, 또는 세자 등의 배우자 선택을 거론하게 되면 예조에서는 전국 각지에 禁婚令을 내려, 處子單子를 거둬들였다. 이후 세 차례의 간택을 거쳐 한 사람을 뽑은 연후에야 비로소 금혼령을 풀고 육례를 거행하게 된다. 이때 최종적으로 뽑힌 처자는 장래 國母로서 자기 자신은 물론 가문에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였다. 이는 국혼이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실과 국혼의 대상이 된 가문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조반정 이후 권력을 잡은 서인세력들이 ‘勿失國婚 崇用山林’이라는 원칙을 표방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 하겠다.

그렇다면 예비왕비와 세자빈과는 다르게 나머지 간택후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조선시대 전공(roovi-lee@hanmail.net).

까? 1681년(숙종 7)의 가례는 庚申大黜陟 직후 당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국혼이었다. 이때 실시된 간택은 이러한 정치적 배경으로 진행된 것이기도 하였지만 조선시대 가족 제도의 근간인 종법제가 사회저변으로 확대되면서 가부장적 가족제가 확립되었던 사회적 배경 아래 시행된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가족질서유지를 위한 유교적인 사회 윤리측면에서 과부의 재혼 금지나 수절 등 일상생활에 대한 엄격한 행위를 여성에게 강요하였다.¹⁾ 모범을 보여야 할 왕실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내외법에 의한 행동규제를 더욱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간택처자들은 왕비 혹은 왕세자빈의 후보가 될 정도의 부덕을 갖춘 여성이자, 엄격한 가법의 교육을 받은 정숙한 여성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落選된 처자들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갈 수 없었던 것이 不文律이라 대개의 경우 왕이나 세자의 후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오늘날 일반적인 상식처럼 인식되어왔다.²⁾ 사실 헌종의 후궁이 된 慶嬪 金氏의 경우나 貞和堂 金氏, 그리고 閔甲完³⁾이 그 예일 것이다. 상기 매우 제한적인 시기의 몇 가지 사례만으로 오늘날의 학자들은 김용숙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여 최근 출간 물에도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이는 연구자들이 기초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범한 오류로써 실증적 작업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1681년(숙종 7) 최종간택선발에서 낙선된 처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추적해 보려한다. 당초 재간택처자인 閔惟重·崔錫鼎·洪澤普의 딸 3명을 포함한 17명이 초간택처자들이었으나 朴世采·沈益善의 딸

- 1) 이순구, 「朝鮮初期 宗法의 수용과 女性地位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1995), 10~11쪽.
- 2) 金用淑, 『朝鮮朝宮中風俗研究』(一志社, 2000), 235쪽. 김용숙은 국문학자로서 조선말 궁녀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궁중풍속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는 사실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매우 제한적인 시기의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고, 조선말에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3) 1907년 1월 영친왕의 관례 후, 閔泳敦의 딸 閔甲完이 영친왕과 약혼하였으나, 일본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였다. 이후 민갑완은 상해로 망명하였다가 1967년 당시 7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김명길, 『樂善齊 周邊: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5』(중앙일보사, 1977), 170쪽.
- 4) 변원립, 『조선의 왕후』(일지사, 2006), 18, 20쪽; 박영규, 『조선의 왕실과 외척』(김영사, 2003), 38쪽; 윤정란, 『조선의 왕비』(이가출판사, 2003), 135쪽;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160쪽;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효형출판, 2001), 143쪽; 신명호, 『조선의 왕』(가람기획, 1998), 201쪽.

2명이 재간택에 추가 선발됨으로써⁵⁾ 민유중의 딸을 제외한 간택처자 총 18명을 연구대상로 삼았다.

이 글은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을 강조하는 조선사회에서 간택 낙선 이후, 간택 처자들의 혼인여부를 추적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선 숙종 초기에 국혼이라는 혈족관계의 연계성으로 자신의 정치세력을 확고히 하려는 간택 후보자들의 가문들을 세밀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비록 간택가문의 경우이긴 하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조선후기 왕실이 어떠한 가문과 통혼권을 이루려 하고 이들 가문들이 당시 정치적·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간택후보자로 뽑힌 그녀들의 경력이 婚姻路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혼인이 이루어진 가문간의 通婚圈을 살펴보는 것도 이러한 연구가 그 전거로써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II. 간택처자들의 출신배경

國舅가 된 민유중의 가문을 제외한 간택후보자들의 가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안일까? 조선조 간택결정에는 처자들의 가문 배경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왕실혼, 특히 왕비 책봉이 왕실의 세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예비왕비가 될 간택후보자가문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사자인 국왕의 의사보다는 당시의 집권기반이나 권력층의 정치적 의도가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본다.⁶⁾

이렇게 볼 때, 1681년(숙종 7)에 이루어진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변화와 집권세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674년(현종 15) 갑인 예송 이후, 집권세력이던 남인이 1680년(숙종 6) 3월 경신환국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당하고 서인집권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때 최종 선발된 서인 명문가 여흥 민유중의 딸이 최종왕비로 간택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정치적 상황변화가 혼인간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5) 李美善, 「肅宗과 仁顯王후의 嘉禮考察」, 『藏書閣』, 제4집(2005), 151~152쪽.

6) 鄭在勳, 「朝鮮初期王室婚과 王室後裔研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1994), 51쪽.

다. 이에 민유중의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집안들의 先代 家系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여 이들 집안의 명문적 가풍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1681년(숙종 7) 왕비 간택후보자의 가문

番號	父	本貫	주요 인물
1	趙持謙	豊壤	趙賢範(同知中樞府事), 趙安國(副總管), 趙徹(宣撫3等功臣), 趙翼·趙持謙(湖堂錄), 趙翼·趙復陽·趙持謙(明阜書院배향)
2	朴泰延	潘南	朴嘗(左議政·佐命3等功臣), 朴薑(左翼3等功臣), 朴尙衷·朴紹(潘溪書院배향), 朴應順(宣祖國舅), 朴兆年·朴紹·朴應福·朴東說·朴潢(5대문과급제)
3	尹摠	坡平	尹坤(翊戴·佐命3等功臣), 尹季童(太宗부마), 尹璠(世祖國舅), 尹士昫(靖難·左翼功臣), 尹巖·尹炯·尹師路(左翼功臣)
4	姜碩昌	晉州	姜碩德(世宗國舅인 沈溫의 사위, 世宗國舅), 姜希孟(翊戴3等功臣·佐理2等功臣), 姜孟卿(佐翼2等功臣, 領議政)
5	曹夏卿	昌寧	曹繼殷(靖國3等功臣), 曹繼商(靖國2等功臣)
6	權頤	安東	權近(開國原從功臣·佐命4等功臣), 權擘(左議政·左翼1等功臣·靖難1等功臣), 權擎(佐翼2等功臣), 權摩(原從功臣), 權擎(靖難3等功臣), 權趾(太宗부마), 權專(文宗國舅), 權健(성종과 사돈), 權輶(領議政)
7	趙持韓	豊壤	趙持謙집안과 사촌
8	尹埵	海平	尹斗壽(領議政·光國2等功臣·扈聖2等功臣), 尹根壽(光國1등功臣·扈聖2等功臣), 尹昉(領議政), 尹新之(宣祖부마)
9	朴緞	密陽	朴彝叙(僉知中樞府事), 朴竹+魯(兵曹參判)
10	安相萬	竹山	安孟聃(世宗부마, 原從1等功臣, 鄭麟趾와 사돈)
11	鄭純陽	溫陽	鄭百朋(刑曹判書), 鄭順朋(補益1等功臣, 讓寧大君曾孫夫), 鄭礪(衛社3等功臣), 鄭礪(魯峰書院배향)
12	安後泰	廣州	安省(清白吏·滄溪書院배향), 安彭命(清白吏), 安潤德(原從功臣), 安湜(宣祖妹夫·扈聖2等功臣), 安後說(湖堂錄)
13	柳昌運	晉州	柳珣·柳謙(清白吏), 柳順汀(靖國1等功臣·領議政·中宗묘향에 배향), 柳泓(靖國4等功臣·衛社原從功臣·중종과 사돈·領議政 洪暹의 장인·領議政 韓效元과 사돈), 柳傅(左議政), 柳時定(原從功臣)
14	尹挾	坡平	尹摠집안과 친족, 尹坤(翊戴·佐命3等功臣), 尹壕(成宗國舅), 尹鞏(靖社·寧社功臣),
15	崔錫鼎	全州	崔士康(太宗·世宗과 사돈), 崔承寧(世宗과 사돈), 崔鳴吉(領議政·靖社1等功臣)
16	洪澤普	南陽	洪敬孫(原從2等功臣), 洪瑞鳳(靖社3等功臣·寧社2等功臣, 領議政), 洪春卿·洪天民·洪聖民·洪瑞鳳(湖堂錄), 洪聖民(光國2等功臣·平難2等功臣), 洪重普(右議政), 洪得箕(孝宗의 부마), 洪命夏(領議政·申欽의 孫夫·清白吏·沂川書院배향)
17	朴世采	潘南	朴泰延집안과 堂族
18	沈益善	青松	沈德符(回軍1等功臣·左議政), 沈溫(領議政·世宗國舅), 沈澹(領議政·成宗과 사돈), 沈涼(太祖부마), 沈溫(世宗의 國舅), 沈安義(世宗부마), 沈之源(領議政·松谷書院배향)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택후보자를 배출한 집안은 모두 18집안이다. 그 가운데에 豊壤趙氏와 潘南朴氏, 그리고 坡平尹氏 가문은 각각 2명씩, 晋州姜氏·昌寧曹氏·安東權氏·海平尹氏·密陽朴氏·竹山安氏·溫陽鄭氏·廣州安氏·晋州柳氏·全州崔氏·南陽洪氏·靑松沈氏는 각각 1명씩의 간택후보자를 배출하였다. 일명 ‘累代功臣宰相之宗’에 해당하는 파평윤씨, 남양홍씨를 필두로 안동권씨, 전주 최씨, 청송심씨의 세족들과 조선 초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흥세력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가문은 국왕과의 외척세력이나 勳功 등을 통하여 왕실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위관을 배출시켜 자신의 문벌적 지위를 고수하려 했던 명문대가들이었다. 이제 이들 가문들을 숙종초의 주도적 정치 세력으로 간주하여 四祖를 중심으로 가문들의 가계관계를 세밀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표 2> 간택후보자의 가계

번호	父	年度	本貫	官職		祖父		曾祖		高祖		外祖	
				揀擇當時	最終	姓名	官職	姓名	官職	姓名	官職	姓名	本貫
1	趙持謙	1639-1685 (仁17-肅11)	豊壤	副護軍	承文院提調 副提學	復陽	吏曹判書	翼	左議政	臺中	僉知中樞府事 贈領議政	沈德	靑松
2	朴泰延	1641-1690 (仁19-肅16)	潘南	敦寧府參奉	奉化縣監	世桓	贈左承旨	潢	全州府尹	東彦	司僕寺正 贈吏曹參判	李敏道	全州
3	尹捷	1628-1660 (仁2-顯1)	坡平	幼學	奉事	助學	高山縣監 贈左承旨	煌	司諫院 贈領議政	昌世	贈吏曹參判	趙廷鸞	白川
4	姜頌昌	1634-1681 (仁12-肅7)	晉州	鍾城府使	鍾城鎮兵馬 僉節使	與載	世子侍講院 輔德 知製教	楫	?	世鳳	將仕郎	申恂	平山
5	曹夏卿	1635-1710 (仁13-肅36)	昌寧	安山郡守	順天府使	時胤	?	挺立	定州牧使	應仁	?	韓崗	淸州
6	權頌	1603-1682 (宣36-肅8)	安東	長陵參奉	敦寧府奉事	脩	進士	縉	兵曹判書 贈領議政	暉	?	申最	平山
7	趙持韓	1634-1707 (仁12-肅33)	豊壤	幼學	幼學	進陽	丹陽郡守	翼	右議政	臺中	僉知中樞府事	金弘郁	廣州
8	尹埴	1627-1689 (仁5-肅15)	海平	前都事	交河郡守	應之	楊根郡守 贈戶曹判書	皖	僉知中樞府事 贈戶曹判書	根壽	左贊成 贈領議政	徐亨履	大邱
9	朴徽	1633-? (仁11-?)	密陽	進士	縣監	守玄	成均館司藝 贈禮曹判書	魯	兵曹參判 世子賓客	彝叙	吏曹參判 贈吏曹判書	李憲	全州
10	安相萬	1642-1697 (仁20-肅23)	竹山	生員	義禁府都事	縝	禮曹參判	廷燮	司僕寺僉正 贈左參贊	大楠	通川郡守 贈吏曹判書	李澄	
11	鄭祿弼	1634-1686 (仁12-肅12)	溫陽	通德	吏曹參判	麟卿	右副承旨	時	景陽察訪	之復	?	李悅	延安
12	安後泰	1635-1689 (仁13-肅7)	廣州	執義	承政院同副承旨	時秀	童蒙教官	應仁	高山縣監	澆	敦寧府都正	趙伯耘	豊壤

13	柳昌運	1642~1710 (仁20~肅36)	晉州	幼學	漢城府 府尹	筵	四山監役	時定	忠勳都事	燦	贈左贊成	成雲翰	昌寧
14	尹楨	1624~1686 (仁2~肅12)	坡平	禮曹 正郎	軍資寺正	源慶	副司果 贈左承旨	商衡	義禁府 都事	鞏	工曹參議	南宮煥	咸悅
15	崔錫鼎	1646~1715 (仁24~肅41)	全州	前承旨	領議政	後尙	贈領議政	鳴吉	領議政	起南	王子節傅 贈領議政	李慶億	慶州
16	洪澤普	1653~1696 (孝4~肅22)	南陽	幼學	臨坡縣令	命夏	領議政	瑞翼	兵曹參議 贈領議政	聖民	判中樞府事兼 戶曹判書 贈領議政	金壽興	安東 全州
17	朴世采	1631~1695 (仁9~肅21)	潘南	副戶長	右議政	綺	司憲府掌令 知製教 贈領議政	東亮	右參贊兼同知 贈領議政	應福	大司憲 贈領議政	元斗樞	原州
18	沈益善	1627~1696 (仁5~肅22)	青松	利川 府使	豐德府使	之源	領議政	俛	四山監役 贈領議政	完忱	肅川府使 贈領議政	洪翼漢	南陽

趙持謙(1639~1685, 汚齋)과 趙持韓(1634~1707, 弼甫)의 풍양조씨는 조선 초기에 趙賢範—趙安國—趙倣 3대가 무신세력으로 병권을 장악, 정계에 활동함으로써 家勢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명의 간택후보자는 이 가문의 후손들로, 父 조지겸과 조지한은 서로 사촌지간이었다.⁷⁾ 조부 趙翼(1579~1655, 浦潛)은 인조대에 元孫輔養官을, 효종대에는 좌의정을 역임하였고, 李珪와 성혼 등의 문묘배향문제를 주장하는 등 정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다.⁸⁾ 효종은 그의 사후에 시호를 내렸고, 장례에 致弔하였다. 조익의 2子 趙進陽(1606~1659, 汝明)과 3子 趙復陽(1607~1671, 松谷)은 각각 조지한과 조지겸의 父가 된다. 조지겸은 훗날 소론의 대표주자로서 朴世采·尹拯·韓泰東·朴泰輔·吳道一·崔錫鼎 등과 교유하였으며, 父 조복양과 尹宣學의 교분으로 尹拯과도 더욱 친하였다.⁹⁾ 또한 의정부에서 뽑은 홍문록에 선발된 것으로 보아 文才가 남달랐던 인물임에 분명하다. 훗날 조익, 조복양, 조지겸 3대에 걸쳐 明臯書院에 추향되기에 이른다.¹⁰⁾

朴泰延(1641~1690, 子久)과 朴世采(1631~1695, 南溪)의 潘南朴氏는 조선 초에 朴兆年의 아들 朴紹(1493~1534, 治川)가 金宏弼의 문인으로, 학행과 공로가 인정되면서 先祖 朴尙衷(1332~1375, 誠夫)과 함께 潘溪書院에 배향되었다.¹¹⁾ 그가 바로 박태연의 5대조이자 박세채의 고조가 된다. 원래 그들은 박소의 4子 朴應福(1530~1598, 拙軒)의 후손들이었다. 그러나 박태연의 조부 朴潢(1597~1648, 德雨)

7) 『韓國系行譜』(寶庫社, 1992), 1414~1417쪽; 『豊壤趙氏世譜(1~7卷)』(豊壤趙氏世譜所, 1978).

8) 池敎憲, 「趙翼의 經學思想」, 『韓國思想家的 새로운 發見(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6쪽.

9) 『肅宗實錄』 卷16, 肅宗 11年 7月 19日 丁丑條.

10) 『肅宗實錄補闕正誤』 卷55, 肅宗 40年 8月 6日 乙亥條.

11) 『羅州郡誌·羅州郡』(羅州君誌編纂委員會, 1980).

이 朴東說의 아들로 태어나 4촌 朴東彦에게 입양되면서 박태연의 집안은 박소→2子 朴應順의 계파로, 박세채의 집안은 박소→4子 朴應福의 계파로 나누어졌다.¹²⁾ 박응순(1526~1580, 健仲)은 세종의 玄孫 李壽甲의 사위로 선조의 국구가 되면서, 領敦寧府事와 五衛都摠府都摠管을 겸직하는 등 병권을 장악하였다. 박세채의 조부 朴東亮(1569~1635, 寄齋)은 扈聖2等功臣을 지냈고, 아버지 朴漪(1600~1644, 中峯)는 湖堂에 선발되었으며, 伯父인 朴瀾(1592~1645, 仲淵)는 선조의 부마가 되었다. 훗날 사림의 영수가 될 박세채는 숙종조에 좌의정에 오르는가 하면 황극탕평설을 제창한 공로가 인정되어 18賢의 문묘와 숙종 묘정에 배향되었다.¹³⁾ 그는 신희의 외손자이자 元斗樞의 사위이며 송시열과는 사돈지간이다. 한편 숙종조 정계에서 활약한 朴世堂·朴泰維·朴泰輔·朴泰淳·朴泰遜·朴弼夢 등과는 당내간 친족 간이었다.

2명의 간택후보자를 배출한 坡平尹氏 역시 대표적인 명문거족이었다.¹⁴⁾ 조선조에도 국훈과 錄功策勳, 그리고 과거를 통해 현달한 인물을 꾸준히 배출시켜 비교적 가통을 오롯이 유지시키고 있었다.¹⁵⁾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家勢는 두 명의 간택후보자를 배출하게 되었는데 모두 태종·세종의 신임을 두터이 얻은 尹坤의 후손들이다.¹⁶⁾ 간택처자들의 父 尹摠(1628~1660, 守道)과 尹峽(1624~1686, 士悅)은 윤곤의 1子 尹希齊→尹摠과 2子 尹三山→尹峽으로 먼 친족 간이다.¹⁷⁾ 윤현의 집안은 조선 중기 이후에 가장 주목되는 魯宗派계열이다. 高祖 尹墩—曾祖 尹昌世의 가계로 이어진 ‘魯宗五房派’는 호서 지방의 대표적인 사족으로 지목될 만큼 당대에 명성을 이미 얻고 있었다. ‘노중오방파’란 윤창세의 5子인 尹燧·尹煌·尹焜·尹燾·尹熿의 5파를 말하는데, 이들은 호란과 청조의 압력이 있던 16~17세기에 척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더욱 명성을 얻었다.¹⁸⁾ 이조참의 尹煌(1571~1639, 八松)

12) 『韓國系行譜』, 868~903쪽; 『潘南朴氏世譜(1~41卷)』(潘南朴氏大同譜所, 1926).

13) 『英祖實錄』 卷103, 英祖 40年 5月 28日 己卯條.

14) 李泰鎭, 「15세기 후반기의 ‘巨族’과 명족의식: 《東國輿地勝覽》人物條의 分析을 통하여」, 『韓國史論』, 제3권(1976), 258쪽.

15) 李海禧, 「17세기 중엽 坡平尹氏 魯宗波의 宗約과 宗學」, 『충북사학』, 제11·12합집(2000), 332~333쪽.

16) 『世宗實錄』 卷15, 世宗 4年 3月 15日 戊辰條. 그의 줄기.

17) 『韓國系行譜』, 1994~2020쪽; 『坡平尹氏魯宗派譜』, 藏MF 35-9694~9695; 『坡平尹氏世譜』1~13卷, 藏MF 35-4276~4279.

18) 신병주, 「17세기 후반 소론학자의 사상: 윤증, 최석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13권(1994),

의 손자가 되며, 유명한 八擧의 직계가 된다. 아버지 尹勛擧(1591~1639, 伯庸)는 牛溪 成渾의 외손이었고, 尹宣擧의 아들 尹拯의 사촌형이었다.

한편 尹三山의 가계인 윤협은 국구 윤호의 7세손이다. 증조 尹鞏(1621~1689, 子固)은 광해군 집권 동안에 폐비론에 연루된 金悌男을 사사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1636년(인조 14)에 삭탈관직 되고 문외 출송을 당하였으나 2년 뒤, 坡平君에 봉해지고, 靖社功과 寧社功으로 각각 嘉善과 嘉義를 加資받게 된다. 더군다나 ‘三戚’으로 지목되고 있는 淸風府院君 金佑明·金佐明·金錫胄 가문과의 통혼은 정치적으로 이 집안의 이익을 뒷받침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姜碩昌(1634~1681, 叔夏)의 晋州姜氏는 고려 말 이래로 유명한 사대부가문이었다.¹⁹⁾ 8대조 通亭公 姜淮伯(1357~1402, 伯父)은 이성계 일파에 유배된 뒤 개국 후에 다시 등용되었던 인물로, 국왕의 측근세력으로 권력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강석창은 강희백의 후손으로²⁰⁾ 7대조 將令 姜宗德 이후에는 고위직의 벼슬을 거치지 못했다.²¹⁾ 그러나 아버지 姜汝載(1601~1658, 公望)가 1661년(인조 9년)에 별시문과에 합격하고²²⁾ 世子侍講院 輔德知製敎을 역임하게 되면서 가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뒤이어 강석창도 1665년(현종 6)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이후 禮訟論爭에서 송시열을 구호하려다 파직당하기도 했으며, 1680년 高山察訪으로 올린 장계에서 福昌君·福善君의 모역문제를 제기하였던 당대의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 집안은 조선중기이후부터 先祖代의 가문적 명망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曹夏卿(1635~1710, 汝弼)의 昌寧曹氏는 조계룡의 7대손 曹延祐부터 曹自奇에 이르기까지 8대에 걸쳐 門下平章事를 배출하면서 고려시대 이래 명족으로 세도를 누려왔다. 원래 曹松君의 支派였으나 아버지 曹時胤(1616~1688, 子述)이 昌山君 曹繼殷의 증손인 曹鸞瑞(1568~1634, 和吉)의 증손으로 입양되면서 曹松茂의 14대손이 되었다.²³⁾ 조계은과 형 曹繼商은 중종반정에 참가하여 靖國3等功臣과 靖國2

118~119쪽.

- 19) 姜世求, 「姜希顔의 <養花小錄>에 관한 一考察」, 『韓國史研究』, 제60권(1988), 37쪽.
 20) 『韓國系行譜』, 1548~1553쪽; 『晉州姜氏掌令公派譜』1~5卷(晉州姜氏掌令公派譜所, 1984).
 2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國譯國朝人物考-姜楫』1卷(1999), 83~85쪽.
 2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이후에 서술되는 사마·진사시와 문과시에 대한 注는 생략하기로 한다.
 23) 『韓國系行譜』, 2413~2425쪽; 『昌寧曹氏族譜』, 藏MF 35-4479~4482.

等功臣에 책록되었고 이에 朴元宗·成希顔 등과 더불어 중종의 측근세력에 있었다. 조하경의父 조시윤은 원래 曹松君의 15대손으로, 생부 曹挺立(1583~1660, 以正)은 1605년(선조 38) 증광생원시와 1609년(광해 1) 문과시에 합격한 후 翰林院·大司諫·牧使 등을 지낸 인물이며, 梁山郡守 曹時亮이 그의 동복형이 된다. 또한 조하경도 1673년(현종 14) 문과시에 입격하고 順天府使의 벼슬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權頤(1603~1682, 汝明)의 安東權氏는 先祖代 權躋—權坦—權溥 3대가 연이어 과거 급제하고 權溥의 아들 代에 재상급 관직과 ‘當代九封君’이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가문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²⁴⁾ 권적의 집안은 權近—權躋—權摩를 잇는 가계로 고조 權棕이 從弟 權慄(1537~1599, 晚翠堂)과 함께 참여한 임진왜란에서 순국하여 숙종조 때에 旌門을 하사받았고 忠愍公을 봉작 받았다.²⁵⁾ 원래 권적의 아버지 權脩는 權統의 아들이었으나, 백부 權縉(1572~1624, 睡隱)에게 입양되었다.²⁶⁾ 권진은 臨海君의 역모사건에서 공을 세워 翼社3等功臣에 책봉된 인물이었다.²⁷⁾ 권적이 영의정 申欽의 증손녀이자 선조의 딸 貞淑翁主의 손녀 平山申氏와 혼인하였다는 사실은 이 집안이 국왕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명문사족 간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력자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尹堉(1627~1689, 次卿)의 海平尹氏 집안은 고조 尹忭(1493~1549, 知足庵)의 아들 尹斗壽(1533~1601, 梧陰)가 영의정에 오르면서 문호의 신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는 아우 尹根壽(1537~1616, 月汀)와 함께 각각 光國2等功臣과 光國1等功臣에 책록되고 扈聖2等功臣에 모두 봉해지면서 명종과 선조대의 국왕측근세력으로 활동하였다. 윤두수의 아들 尹昉(1563~1640, 稚川)도 영의정에 올라 이괄의 난을 진압했는가 하면, 정묘호란 때에는 인조를, 병자호란 때에는 鳳林大君을 호종하는 등 당대 명신으로서 왕실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²⁸⁾ 그의 아들 尹新之(1582~1657, 燕超齋)가 선조의 딸 貞惠翁主와 혼인한 사실은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24) 金光哲, 「高麗後期 世族의 가계와 그 특징」, 『高麗後期世族層研究』(동아대출판부, 1991), 66-67; 李正浩, 「高麗後期 安東權氏 가문의 經濟的 基盤: 權仲時-權守平계열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21卷(2005), 339쪽.

25) 『肅宗實錄』卷48, 肅宗 36年 3月 3日 戊辰條; 『肅宗實錄』卷50, 肅宗 37年 6月 16日 甲戌條.

26) 『韓國系行譜』, 1226~1343쪽; 『安東權氏樞密公派大譜』, 藏MF 35-9718~9721.

2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國譯國朝人物考-權縉』 2卷(2000), 184~189쪽.

2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國譯國朝人物考-尹昉』 16卷(2003), 235~252쪽.

것이라 하겠다. 윤서의 아버지 尹應之(1582~1641, 時卿)는 윤신지와 6촌간이자,²⁹⁾ 윤근수의 장손이다. 이처럼 先祖때부터 이어온 고위직 배출과 통훈, 그리고 공훈 등 왕실과의 관계로 정치적 지위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朴緄(1633~?, 成卿)의 密陽朴氏는 朴陟의 후손이다.³⁰⁾ 이 집안은 조선조 명종 때에 父子 朴栗과 朴彝叙(1561~1621, 泌川)의 문과급제를 계기로 중흥의 조짐을 보였다. 그들이 바로 박치의 고조와 증조이다. 증조 박이서는 이조참판을 지냈고, 1599년(선조 32)에는 李爾瞻·洪汝諄 등을 탄핵하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삭탈관직 되었으나, 복직되어 僉知中樞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조부 朴竹+魯(1584~1643, 魯直)는 병조참판을, 父 朴守玄(1605~1675, 太玄)은 成均館司藝를, 그 자신도 1660(顯宗 1) 식년진사시에 3등으로 입격하고 奉化縣監에 임명되는 등 지속적인 관료 배출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박치의 가계가 朴守玄—朴竹+魯—朴彝叙—朴栗 4대에 걸쳐 문과합격과 관료직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였다는 사실은 명문대가로서 부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安相萬(1642~1697, 世休)의 竹山安氏가문은 조선 초기에 왕실과의 통훈과 勳功 그리고 仕宦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9대조 延昌尉 安孟聘(1415~1462)이 세종의 딸 貞懿公主와 혼인하였고,³¹⁾ 原從1等功臣이 되었다.³²⁾ 아울러 당대 최고의 文翰과 학식을 자랑하는 유학자 鄭麟趾(1396~1478, 伯睢) 가문과의 혼맥은 안맹엄의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강화해 주기에 충분하였다. 안상만은 功臣 안맹엄의 가계로,³³⁾ 증조 安大楠(1572~1623, 壽伯)이 通訓郡守를, 조부 安廷燮(1591~1656, 和叔)이 司僕寺僉正을 역임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 安纘(1617~1685, 栗甫)이 예조참판 등 고위직에 임명되어 증조와 조부는 이조판서와 좌참찬에 각각 추증되었다.³⁴⁾

鄭絳埜(1634~1686, 子賓)의 溫陽鄭氏는 6대조 鄭鐸(1452~1496, 警叔)의 아들 鄭百朋·鄭順朋형제가 각각 중종대에 형조판서와 호조판서·지중추부사 등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家勢가 중흥되었다.³⁵⁾ 특히 정순봉은 슬하에 5子 6孫을 두었는

29) 『韓國系行譜』, 2077~2102쪽; 『海平尹氏大同譜』1~6卷(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1983).

30) 『韓國系行譜』, 927~931쪽; 『密城朴氏族譜』1~31卷(密城朴氏大同譜所, 1929).

31) 『世宗實錄』卷39, 世宗 10年 2月 13日 乙丑條.

32) 『世祖實錄』卷2, 世祖 1年 12月 27日 戊辰條.

33) 『韓國系行譜』, 1894~1896쪽; 『竹山安氏大同譜』(竹山安氏大宗會, 1999).

3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國譯國朝人物考-安纘』13卷(2003), 246~247쪽.

데,³⁶⁾ 이들에 의해 온양정씨는 관료배출 뿐 아니라 문화계를 주도하여³⁷⁾ 17세기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정순양의 고조인 抱川縣監 鄭礪(1506~1549, 北窓)³⁸⁾은 宋麟壽와 함께 魯峰書院에 봉안되었는데,³⁹⁾ 이처럼 이 가문이 갖은 관료직과 공훈, 그리고 학문적 소양이 명문대가로서의 가문적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安後泰(1635~1689, 月窓)는 廣州安氏 安潤德(1457~1535, 善卿)의 6대손이다.⁴⁰⁾ 안윤덕에 의해 최고층에 있었던 이 가문의 지위는 선조의 妹夫가 된 安滉(1549~1593, 景浩)에 의해 더욱 조장되었다. 그가 바로 안후태의 증조가 된다. 안후태는 숙종조 때에 대간으로서 경신대출척에 참여하였고, 전라우도 암행어사를 거쳐 승지에 이르렀다. 이때 일급 거족들과의 통혼이 이루어졌다. 두 명의 딸이 각각 우의정을 지낸 全義李氏 李行遠의 孫婦와 외척세력인 淸風金氏 가문으로 출가하게 된다. 또한 만아들의 장인은 昌寧成氏 成虎徵으로 남인정권 당시 閔鼎重과 金萬重·李栗·李選 등 노론세력들의 구명 활동을 하다가 강계에 유배되었던 인물이었다. 한편, 李山海의 외손 安獻徵과 효종조 湖堂錄에 등재된 安後說 등이 그의 당내간 친족들이다.

柳昌運(1642~1710, 亨伯)의 晉州柳氏는 8대조 領議政 柳順汀(1459~1512, 智翁)으로⁴¹⁾ 인해 가세가 신장되었다. 이후에도 7대조 柳泓(1483~1551, 子淵)의 공신 책록과⁴²⁾ 증종과 사돈지간이 된 국훈, 그리고 다른 일급 거족대가들과 맺고 있는 가문 자체의 통혼이⁴³⁾ 이 집안이 현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유창운의 증조 柳燦(1577~1616, 晦甫)은 조부 金부도사 柳時定(1596~1658, 安世)이 원종공신이 되면서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⁴⁴⁾ 父 柳庭과 동

35) 『韓國系行譜』, 1120~1123쪽; 『溫陽鄭氏世譜』, 藏MF 35-2142~2143.

36) 정순봉의 4子 鄭礪은 형 鄭百朋을 계후하였고, 3子 鄭礪의 아들 鄭之升은 鄭礪을 계후하였기 때문에 계통상으로 4子 5孫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37) 정재서, 「<溫城世稿>를 통해 본 朝鮮朝 丹學波의 이념적 性格」, 『한국정신과학학회지』, 1권 1호 (1997), 25쪽.

38) 北窓 鄭礪의 師友關係와 사상에 대해서는 孫燦植, 「北窓 鄭礪 研究-生涯와 思想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29집(1990)이 있다.

39) 『孝宗實錄』卷21, 孝宗 10年 閏3月 28日 戊子條.

40) 『韓國系行譜』, 1886~1889쪽; 『廣州安氏族譜』(國立中央圖書館所藏 古書 104958~104968).

41) 『韓國系行譜』, 1655~1660쪽; 『晉州柳氏世譜』1~4卷(晉州柳氏世譜編纂委員會, 1983).

42) 『中宗實錄』卷1, 中宗 1年 9月 8日 甲申條; 『明宗實錄』卷2, 中宗 元年 9月 15日 乙亥條.

43) <표 1>참조.

생 柳成運(1651~1710, 集中)은 2대에 걸쳐 문과급제 후에 世子侍講院弼善을 거쳤다. 유성운 자신도 1685년 윤선거와 윤증부자의 무함을 변호하는 등 現政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인물이었다.

全州崔氏 崔錫鼎(1646~1715, 明谷)은 敬節公 崔土康의 家系로 完興府院君 崔起南(1559~1619, 興叔)의 증손이자, 領議政 崔鳴吉(1586~1647, 子謙)의 손자이다. 完陵君 崔後亮(1616~1693, 漢卿)의 아들로 태어나 崔後尙(1631~1680, 周卿)에게 입양되었고, 영의정 崔錫恒(1654~1724, 汝久)이 그의 아우가 된다.⁴⁵⁾ 일찍이 南九萬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尹拯, 朴世采와 교유하여 1685년(숙종 11) 윤증을 변호하여 김수항을 탄핵하다가 과직 당했다. 그러나 1702년(숙종 28) 전후 무려 8번에 걸쳐 영의정에 역임되어 숙종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고 정책수행에 많은 공헌을 세웠다.⁴⁶⁾ 이에 숙종 묘정에 배향되기에 이른다. 한편 강원도감사 安獻徵(1600~1674, 聖觀)이 그의 외조부이고 좌의정 李慶億(1620~1673, 錫爾)이 장인이다. 이렇듯 명문세족간의 혼맥을 통해 명문대가로서의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南陽洪氏 洪澤普(1653~1696, 施叔)의 집안은 南陽君派 洪澍의 후손으로,⁴⁷⁾ 왕조교체과정에서 훈업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지속적으로 과거급제와 관료를 배출하면서 가문의 번영을 유지하였다. 고조 洪春卿(1497~1548, 石壁)은 아들 洪天民과 洪聖民, 손자 洪瑞鳳과 함께 3대 4湖堂의 명예를 누렸고, 홍성민의 후손들은 그로부터 6대에 걸쳐 무려 7명이 大科에 합격하였다. 5대조 洪係貞(1471~1514, 叔幹)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9대 大科'라는 조선조 唯一無二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⁴⁸⁾ 홍택보의 증조인 洪聖民(1536~1594, 拙翁)은 당시 신진사류의 지도급 인물로, 光國2等功臣과, 平難2等功臣에 봉해졌다.⁴⁹⁾ 4촌간인 洪重普(1612~1671, 遠伯)는 우의정에, 아버지 洪命夏(1608~1668, 沂川)는 영의정에 올랐다. 영의정 申欽의 孫夫이기도 한 그는 숙종조 清白吏에 뽑혔고⁵⁰⁾ 여주 沂川書院에 배향되었다.⁵¹⁾

4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國譯國朝人物考-柳燦』16卷(2003), 53쪽.

45) 『韓國系行譜』, 1913~1919쪽; 『全州崔氏敬節公派世譜』2卷, 藏MF 35-4522~4528.

46) 신병주, 앞의 논문(1994), 122쪽.

47) 『韓國系行譜』, 1705~1736쪽; 『南陽洪氏南陽君派世譜(1~14卷)』(南陽洪氏南陽君派大宗中會編, 2004).

48) 洪係貞-洪春卿·洪春年-洪天民·洪聖民-洪瑞鳳·洪瑞翼-洪命考·洪命夏-洪重普-洪致中-洪夏正-洪相繼.

49) 『宣修實錄』卷24, 宣祖 23年 8月 1日 庚午條.

이에 孝宗의 딸 淑安公主가 홍중보의 아들 洪得箕와 혼인하게 되었다. 한편 홍택보는 判書 尹檠의 외손자인 동시에 영의정 金壽興(1626~1690, 退憂堂)의 사위였다. 이 당시 현종조 후반부터 정치권력의 최고핵심부를 자랑하는 안동김씨 김수흥·김수항 가문과의 혼맥은 홍택보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靑松沈氏 沈益善(1627~1696, 仲兼)의 집안은 태조의 부마인 沈淙의 가계로 그는 沈宗敏의 손자 沈之澤에게 태어나 沈宗忱의 손자 沈之源에게 입양되었다.⁵²⁾ 沈之源(1593~1662, 晚沙)은 영의정을 지낸 인물로, 1630년(인조 8) 咸鏡道按察御史로 파견되어 胡人에게 賣馬賣人한 자를 적발하는 동시에 六鎭방어에 대한 대책을 진언하여 인조의 신임을 얻었고,⁵³⁾ 松谷書院에 배향되었다. 아들 沈益顯이 효종의 부마가 되어 효종과도 戚里관계에 있었다. 이에 심익선은 음직으로 豐德府使에 오르게 되었고, ‘丙子三學士’라 일컫는 남양홍씨 洪翼漢의 사위이자 좌의정 趙泰采의 장인이 되었다.

이상에서 숙종조에 간택된 18명의 후보자 가문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조선초 ‘累代功臣宰相之宗’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문가였다. 이후에도 국훈과 공신세력을 이루고 지속적인 顯官(高位官)을 배출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명문세족간의 혼맥을 통해 거족 세력으로 성장해나갔다. 당시 이들은 경신환국 이후 주도권을 장악한 서인집권당으로서 남인세력을 정치세력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1681년(숙종 7) 국훈에서 남인세력은 단 한 명의 후보자도 없었다. 이는 왕비위가 현 정권의 정치세력에 좌우되며 집권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숙종 치세의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왕비자리를 둘러싼 서인과 남인간의 싸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III. 간택처자 추정 및 혼인여부

1681년(숙종 7) 간택에 참여하고서 최종선발에서 낙선된 처자들은 이후 혼인을

50) 『肅宗實錄』 卷29, 肅宗 21年 7月 11日 辛未條.

51) 『純祖實錄』 卷4, 純祖 2年 4月 7日 丁未條.

52) 『韓國系行譜』, 1577~1601쪽, 『靑松沈氏世譜』1~24卷, 藏MF 35-9333-9335.

53) 『仁祖實錄』 卷23, 仁祖 8年 9月 16日 壬辰條.

하였을까? 3차에 걸쳐 치러진 삼간택에서 여흥민씨의 가문을 제외하고 18집안의 처자가 왕비간택에서 탈락되었다. 이들 가문 중에서 간택처자를 추적하는 작업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관련 사료의 부족 때문이다.

앞서 말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때 가장 적절한 추적방법은 각 가문의 족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족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인물의 系譜 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생몰년, 자녀수 등) 및 관직진출상황, 혼인관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父系족보에 명시되어 있는 딸의 기록은 남편의 이름과 본관, 관직, 그리고 아들의 관직이 기록될 뿐이다. 이에 父系에 기재된 남편의 姓貫사항을 근거로 夫系족보에 명시되어 있는 딸들의 생몰년을 살펴본 후, 처자단자의 수록 범위인 1663~1667년생, 나이로는 15~19세의 범위와 비교, 분석한다면 어느 정도 간택처자를 판가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夫系族譜에 명시되어 있는 18집안 자녀들의 생몰년을 표로 작성하면 <표 3>과 같다. 이때 필자는 간택처자를 추정하는 데에 편의상 4개의 群으로 범주화 하여 나누어 보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추정이 확실한 경우(◎ 표시)가 6 경우, ② 추정 가능한 경우(○표시)가 7 경우, ③ 추정 불가능한 경우(△표시)가 2경우 그리고 ④ 기타(不明표시)가 3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족보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생몰년을 기준으로 판별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표 3> 18집안의 가족 생몰년

事例	父		母		子女		配偶者	本貫	生沒年	비고
	姓名	生沒年	本官(姓)	生沒年	性別	生沒年				
1	趙持謙	1639~1685	靑松沈氏	1640~1667	系(命禎)	1663~1723	李氏	完山	1665~1731	○
					女	1662~1734	李明觀	韓山	1664~1718	
					女	?	李宇春	全義	1668~1708	
			女	?	李宜復	龍仁	1677~1715			
			星州李氏	1658~1721	女	?	鄭錫敷	東萊	1682~?	
					女	?	崔尙顥	海州	1688~1747	
2	朴泰延	1641~1690	全州李氏	1643~1724	弼揆	1663~1718	權氏	安東	1663~1738	◎
					女	1667~1698	黃瑞河	昌原	1667~1744	

					弼授	1670~1708	李氏	韓山	1668~1691	
					弼休	1672~1718	李氏	慶州	1671~1717	
					女	1680~1725	南氏	宜寧	1672~1718	
					女		李宜壽	全州	1680~1751	
					弼揚	天	鄭遠	東萊		
3	尹摠	1628~1660	白川趙氏	1625~1701	正教	1651~1673	朴氏	密陽	1651~1722	○
					女	?	李汝珪	韓山	1650~1680	
					女	?	許號	陽川	1657~1685	
					女	?	安益舒	順興	1662~1690	
					常教	?	?	?	?	
4	姜碩昌	1634~1681	平山申氏	1633~1713	晉相	1652~1718	沈氏	靑松	1653~1732	△
					泰相	1654~1722	尹氏	坡平	1655~1718	
					履相	1657~1719	李氏	韓山	?	
					濟相	1672~1719	李氏	韓山	?	
							李氏	驪州	?	
					信相	1691~?	權氏	安東	1690~?	
					箕相	?	徐氏	達城	?	
					女	?	韓鎮箕	淸州	1664~1755	
					女	1665~1742	任道鼎	豐川	1667~1724	
女	?	李宗岳	慶州	1668~1732						
5	曹夏卿	1635~1710	淸州韓氏	?	一運	1652~1730	崔氏	慶州	?	◎
					女	1661~?	李氏	全州	?	
					女	1666~1718	李浮命	全州	1650~1717	
6	權頤	1603~1682	平山申氏	?~1638	翁	1669~1738	李氏	全州	?~1750	不明
					翁	1674~1724	李氏	韓山	?	
							黃氏	昌原	?	
							李氏	全州	?	
					畬	1678~?	沈氏	靑松	?	
							朴氏	密陽	?	
					女	1657~1724	鄭重龜	海州	1656~1693	
女	1662~1698	安世興	竹山	1662~1719						
女		李悅道	全州							
7	趙持韓	1634~1707	廣州金氏	?~1688	命迪	1670~1723	尹氏	海平	1668~1691	不明
					女	?	任氏	豐川	1674~1733	
					女		金泰壽	光州	1662~1735	
8	尹埴	1627~1689	大邱徐氏	?	聖任	1652~1714	曹氏	昌寧	?	△
			南原尹氏	?			韓氏	淸州	?	
					聖和	1669~1727	金氏	延安	1666~1740	
					聖時	1672~1730	李氏	慶州	?~1736	
					女	?	愼爾定	居昌	1657~?	
女	1660~1734	韓重朝	淸州	1660~1738						

					女	1662-1751	李彥純	全州	1662-1713		
					女	?	申湊	高靈	1665-1754		
					女	?	李重輔	慶州	1668-?		
					女	1682-1707	朴弼厚	潘南	1680-175		
					女	1686-1718	金聖渙	安東	1683-1747		
9	朴緻	1633-?	全州李氏	?	元東	1654-1728	申氏	高靈	?	○	
					亨東	1659-1693	曹氏	昌寧	?		
							申氏	高靈	?		
					女	1652-1734	慶文會	淸州	1651-1716		
					女	1662-1706	吳彥綸	海州	1662-1697		
					女	?	李宇全	全州	1664-1743		
			韓山李氏	1645-?	利東	1663-1732	李氏	全州	1659-1720		
10	安相萬	1642-1697	延安李氏	1642-1672	無子女						○
			延安李氏	1647-1697	允升	1685-1735	李氏	德水	1682-1748		
					女	1660-1713	李恒坤	慶州	1659-1729		
					女	?	李翼明	星州	1664-1720		
			女	?	申喜集	高靈	1682-1740				
11	鄭純陽	1634-1686	延安李氏	1635-1662	無子女						◎
			淸州韓氏	1643-1731	壽淵	1681-1732	閔氏	驪興	1682-1733		
					女	1667-1741	尹志益	漆原	1668-1729		
					女	1673-?	洪遠度	南陽	1673-1727		
			女	1676-1758	李昌彦	全州	1677-1727				
12	安後泰	1635-1689	豐壤趙氏	?	瑞夏	1659-1699	成氏	昌寧	?	○	
					瑞宗	?	任氏	豐川	?		
					女	?	李徵楫	全義	1656-1707		
					女	1664-1697	金錫蕃	淸風	1664-1723		
13	柳昌運	1642-1710	昌寧成氏	1639-?	緝	1668-?	尹氏	茂松	?	不明	
							李氏	慶州	?		
					緬	1673-1695	李氏	星州	?		
					女	1664-1720	李穡	全州	1665-1687		
					女	?	李世舟	龍仁	1669-1749		
			女		李廷高	星山					
14	尹峽	1624-1686	咸悅 南宮氏	?	廷鳳	1650-1713	李氏	廣州	?	◎	
					廷龍	1656-1767	洪氏	南陽	?		
					廷麟	1657-1679	韓氏	淸州	?		
					廷虎	?	李氏	全州	?		
					女	1645-1627	金錫翼	淸風	1645-1686		
					女	1648-1687	金盛大	安東	1651-1710		
			女	1663-1730	李涉	全州	1664-1692				
15	崔錫鼎	1646-1715	慶州李氏	?	昌大	1669-1720	吳氏	海州	1671-1746	○	
					女	1667-1739	李聖輝	全州	1670-1714		
					女	?	李景佐	慶州	1680-1696		
					庶女	?	尹尙慎	坡平	?		
16	洪澤普	1653-1696	安東金氏	1651-1692	得壽	1675-1724	李氏	全州	1675-1747	◎	
					得福	1684-1732	李氏	慶州	1684-1755		

					女	1667-1716	趙明彬	楊州	1669-1700	
					女	1671-1721	徐命倫	大邱	1672-1699	
					女	1680-1718	尹滢	海平	1680-1737	
			全州柳氏	1670-1684	無子女					
17	朴世采	1631~1695	原州元氏	1631~1704	泰殷	1650-1696	趙氏	咸安	1651~1709	○
					泰輿	1651-1702	尹氏	漆原	1653-1725	
					泰正	1654-1738	李氏	韓山	1655-1731	
					女	?	宋淳錫	恩津	?	
					泰晦	1658-1734	申氏	平山	1658-1720	
					女	?	申聖夏	平山	1665-1736	
18	沈益善	1627~1696	南陽洪氏	1626-1682	廷著	1651-?	李氏	完山	?~1711	◎
					廷老	1653-1712	黃氏	昌原	1652-1725	
					廷壽	1656-1714	韓氏	淸州	1654-1699	
					女	1649-1684	李泳	延安	1650-1692	
					女	1658-1691	黃夏民	昌原	1660-1724	
					女	1660-1699	趙泰采	楊州	1660-1722	
					女	1661-1722	洪禹瑞	南陽	1662-1716	
					女	1665-1702	李漢章	全州	1666-1697	

* 위의 표의 굵은 표시는 간택처자로 추정된 경우임.

먼저 간택처자의 추정이 명확하게 판별될 수 있는 6사례(2, 5, 11, 14, 16, 18)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 경우 대체로 夫系족보에 간택처자들의 생몰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사례2) 경우, 맏딸(1667~1698)이 丁未生이라는 사실과⁵⁴⁾ 2녀(1680~1725)가 庚申生이라는 사실을 근거로⁵⁵⁾ 맏딸이 15살에 간택된 처자로 확인된다. 사례5) 경우에도 맏딸의 출생년(1661년)이 전주이씨세보에 보이고⁵⁶⁾ 2녀(1666~1718)의 생몰년이 남편의 世譜에서 보이므로⁵⁷⁾ 2녀가 16살에 간택된 처자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사례11) 경우엔 세 딸의 출생 순서에 따라 丁未(1667), 癸丑(1673), 丙辰(1676)이란 사실이 확인되고,⁵⁸⁾ 사례14) 경우에도, 세 딸의 출생년이 각각 乙酉(1645), 戊子(1648), 癸卯(1663년)生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⁵⁹⁾ 사례

54) 『昌原黃氏世譜』5卷(昌原黃氏世譜編纂委員會, 1999), 219쪽.
 55) 『全州李氏孝寧大君靖孝公派世譜』, 藏MF 35-9961-9964, 192쪽.
 56) 『全州李氏密城君派世譜』1卷(全州李氏密城君派宗會, 2002), 155~156쪽.
 57) 『韓山李氏世譜』, 藏MF 35-2160~2161, 571~572쪽.
 58) 『漆原尹氏世譜』13卷(尹晟學等編, 1960), 5쪽; 『南陽洪氏南陽君派世譜』5卷(南陽洪氏南陽君派大宗中會, 2004), 541~542쪽; 『全州李氏密城君派世譜』1卷(全州李氏密城君派宗會, 2002), 108~109쪽.
 59) 『淸風金氏世譜』3卷(金在魯編, 1750), 仕~攝쪽; 『安東金氏世譜』5卷(金濟謙編, 1833), 414쪽; 『全州李氏廣平大君派世譜』2卷(全州李氏廣平大君派宗會, 1977), 8쪽.

별로 15살에 뽑힌 맏딸(사례11)과 19살에 뽑힌 3녀(사례14)가 간택처자였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사례16)의 경우를 살펴보면, 2녀(1671~1721)와 3녀(1680~1718)의 출생연도가 辛亥生과 庚申生인 점을 감안하고,⁶⁰⁾ 맏딸의 생몰년(1667~1716)을 고려해 본다면⁶¹⁾ 맏딸이 15살의 나이로 재간택에 뽑힌 처자임에 틀림없다. 사례18)의 경우에도, 다섯 명의 딸 모두 생몰년이 각각 남편들의 집안세보에서 확인되었다. 예컨대, 맏딸(1649~1684)은 己丑生,⁶²⁾ 2녀(1658~1691)는 戊戌生, 3녀(1660~1722)는 庚子生, 4녀(1661~1722)는 辛丑生, 그리고 5녀(1665~1702)는 乙巳生이었다.⁶³⁾ 이로써 5녀가 간택처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상 여섯 사례의 경우를 보면, 각 집안의 모든 딸들이 남편족보에서 생몰년을 확인, 비교할 수 있어 간택처자를 비교적 손쉽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다.

다음 ‘간택처자’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정황판단이 요구되는 7사례(1, 3, 9, 10, 12, 15, 17)의 경우이다. 이 경우 전하는 사료가 없는 상황에서 추론만으로 얼마만큼의 신뢰성이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허나 이들이 ‘간택처자’라는 추정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항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해당처자의 생몰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1) 경우 초간택에 선발된 딸은 2녀로 추정된다. 맏딸(1662~1734)은 생몰년이 확인되어⁶⁴⁾ 제외되고, 나머지 4명의 딸들은 생몰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3녀 남편의 생몰년(1677~1715)이 규정된 단자범위(1663~1667년생)에 크게 벗어나고 있어⁶⁵⁾ 3녀부터는 간택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⁶⁶⁾ 2녀의 남편(1668~1708)이 戊申生이라는 사실과는 대조적이며⁶⁷⁾ 따라서 2녀로 추측되는 것이다.

60) 『大丘徐氏世譜』7卷(大丘徐氏世譜編纂委員會, 2003), 1쪽; 『海平尹氏大同譜』3卷(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1983), 892~893쪽.

61) 『楊州趙氏族譜』, 藏MF 35-2086, 113쪽.

6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國朝人物考-李泳』21卷(2004), 259~264쪽.

63) 『昌原黃氏波譜』, 藏MF 35-4615, 月쪽; 『楊州趙氏譜』, 藏MF 35-2086, 128~129쪽; 『南陽洪氏南陽君派世譜』5卷(南陽洪氏南陽君派大宗中會, 2004), 772~773쪽; 『全州李氏完原君派譜』4卷(全州李氏完原君派譜編纂委員會, 1999), 167~168쪽.

64) 『韓山李氏文襄公派世譜』2卷(韓山李氏文襄公宗會, 1995), 139쪽.

65) 『龍仁李氏大同譜』2卷(龍仁李氏大宗會, 1983), 775쪽.

66) 『東萊鄭氏族譜』, 藏MF 35-4448~4449, 26쪽; 『海州崔氏大同譜』6卷(海州崔氏大宗會, 1990), 705쪽.

사례3) 경우 3녀로 추정된다. 맏딸과 2녀의 남편 李汝珪(1650~1680)과 許琥(1657~1685)의 세보에⁶⁸⁾ 그녀들의 출생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 첫째 부인이고, 남편들의 출생년을 고려해 본다면 간택규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3녀의 경우에도 남편 安益舒(1662~1690)의 족보에서⁶⁹⁾ 출생년도를 확인 할 수 없다. 다만 남편이 壬寅(1662년)生이고 보면, 처자단자의 수록 범위(1663~1667년생)에 근접하고 있다.

한편 사례9) 경우, 맏딸(1652~1734)은 壬辰生이고,⁷⁰⁾ 2녀(1662~1706)는 壬寅生이므로⁷¹⁾ 3녀가 간택 후보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록 그녀의 생몰년을 확인할 수 없으나, 남편이 1664년생임을 감안해 볼 때,⁷²⁾ 간택처자일 가능성이 있다. 사례10) 경우, 맏딸(1660~1713)은 庚子生이지만,⁷³⁾ 2녀와 3녀는 생몰년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남편들이 각각 1664년생과 1682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⁷⁴⁾ 규정된 단자범위에 근접하고 있는 2녀가 간택처자라는 추측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례12) 경우, 맏딸의 남편이 1656년생이라는 점과,⁷⁵⁾ 2녀와 남편의 출생년이 모두 1664년생이라는 점을 확인해 볼 때,⁷⁶⁾ 2녀가 간택처자에 해당된다.

끝으로 사례15)와 17)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5)에서 간택처자는 맏딸이다. 2녀의 생몰년을 알 수 없지만 남편(1680~1696, 休文)의 출생년도가 庚申生임을 감안하고⁷⁷⁾ 맏딸(1667~1739)의 출생년도가 丁未生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 67) 『全義李氏姓譜』1卷(全義禮安李氏大同譜刊行委員會, 1992), 285쪽.
 68) 『韓山李氏世譜』, 藏MF 35-2160~2161, 560쪽; 『陽川許氏世譜』, 藏MF 35-4596, 23쪽.
 69) 『坡平尹氏魯宗派譜』3卷(藏MF 35-9694~9695, 30쪽)에 셋째 딸의 夫가 ‘安漢舒’로 기재되었으나, 『順興安氏三波大同譜-文肅公波利川公』2卷(順興安氏大宗會, 631쪽)세보를 확인한 결과, ‘安益舒’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아들 安克順의 부친이름이 ‘安益舒’로 확인되었다. ‘安漢舒’의 표기는 安益舒의 父 安漢珪의 中字 ‘漢’字와 安益舒의 終字 ‘舒’을 합친 誤記인 듯하다.
 70) 『淸州慶氏族譜』上卷(淸州慶氏大同譜所, 2005), 563쪽.
 71) 『海州吳氏大同譜』7卷(海州吳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91), 1쪽.
 72) 『全州李氏廣平大君派世譜』(宗會, 1977), 4쪽.
 73) 『慶州李氏大宗譜』8卷(慶州李氏中央花樹會, 1987), 213쪽.
 74) 『星州李氏文烈公派譜』7卷(星州李氏文烈公派譜刊行會, 1983), 5쪽; 『高靈申氏世譜』3卷(高靈申氏大宗會, 1995), 36쪽.
 75) 『全義李氏姓譜』(全義禮安李氏大同譜刊行委員會, 1992), 784쪽.
 76) 『淸風金氏世譜』7卷(金學性編, 1857), 43쪽.
 77) 『慶州李氏大宗譜』32卷(慶州李氏中央花樹會, 1987), 46~47쪽.

면78) 당시 15살에 간택되었던 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사례17)의 경우에 간택처자는 2녀이다. 맏딸은 남편과 더불어 생몰년을 확인할 수 없지만79) 朴泰正의 1654년(甲午生)과 朴泰晦의 1658년(戊戌生)의 중간시기에 태어났으므로 간택규정범위에서 제외된다. 2녀도 생몰년을 알 수 없지만 남편(1665~1736)이 乙巳生이라는 점과80) 3녀가 1674년(甲寅生)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81) 2녀가 간택에 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이상 6사례의 경우를 보면, ①항의 범주처럼 간택처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정황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②항 범주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는 데에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부부간의 혼인 연령차를 몇 살까지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당시 士庶人의 경우 남녀의 혼인연령차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명문 규정이나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종실혼의 경우 그 연령차를 6세 이하로 규정하는 실록기사를 살펴보면82) 당시 부부의 혼인연령차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를 수치화한 <표 4>의 데이터는83) 이의 사실을 다소나마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면 간택처자의 추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 항목은 간택처자들의 생몰년이 많이 누락되었거나 혹 기재되어도 동기간 나이차가 별로 크지 않고 간택일자 범위에도 근접하여 간택처자를 추적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우선 사례4) 경우에 맏딸이 남편 韓鎭箕(1664~1755, 長卿)의 첫째 부인이라는 점과 남편이 甲

78) 『全州李氏廣平大君派世譜』(宗會, 1977), 9쪽.

79) 『恩津宋氏族譜』, 藏MF 35-4153, 19쪽.

80) 『平山申氏文僖公派世譜』2卷(平山申氏文僖公派譜所, 1997), 321쪽.

81) 『星州李氏文烈公派世譜』7卷(星州李氏文烈公派譜, 1983), 4쪽. 『潘南朴氏世譜』1~41卷(潘南朴氏大同譜所, 1926)에는 李德明의 本貫이 星山人으로 기재되어 찾기가 어려웠으나, 星州李氏大宗會 이상복 선생님(bokgae@hanmail.net)의 도움으로 찾을 수가 있었다. 이 점 감사드린다.

82) 『文宗實錄』卷4, 文宗即位年 11月 21日 辛酉條. “禮曹啓 宗室婚嫁時 男女之年六歲已上相長者 勿令許婚 從之.”

83) 당시 혼인연령차를 알아보기 위해 <표 3>에서 부부생몰년이 확인되는 총 64쌍을 기준으로 도표화 해본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당시 연령차가 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남편이 5살 이상 많은 2쌍의 경우에도 부인이 繼室인 경우였다.

<표 4> 혼인 연령차

나이차	-3	-2	-1	동갑	1살	2살	3살	4살	5살 이상
합계	6쌍	8쌍	11쌍	19쌍	11쌍	5쌍	1쌍	1쌍	2쌍

辰生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⁸⁴⁾ 간택처자일 가능성이 있다. 3녀의 경우에도 생몰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남편(1668~1732, 立卿)이 戊申 생임을 감안해 본다면⁸⁵⁾ 남편보다 한두 살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2녀는 생몰년(1665~1742)이 확인되어⁸⁶⁾ 17살로 뽑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간택후보자를 추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 같은 점은 사례8)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우선, 2녀(1660~1734)는 庚子生이므로⁸⁷⁾ 맏딸과 함께 간택나이의 범위 밖을 벗어나고 있다.⁸⁸⁾ 이외에 3녀(1662~1751)와 6녀(1682~1707), 그리고 7녀(1686~1718)도 자연 제외된다.⁸⁹⁾ 그러나 申湊(1665~1742, 會仲)와 李重輔(1668~?, 弼之)의 부인인 경우, 생몰년이 기재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남편들이 1665년생과 1668년생인 점을 미루어 본다면⁹⁰⁾ 모두 간택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례4)와 8)의 경우처럼 간택후보자를 정확히 가릴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딸들이 혼인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④항 기타 범주에 속한 사례6), 7), 13)들은 父系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夫의 성명과 본관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夫의 집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권적의 3녀(全州 李悅道), 조지한의 2녀(豐川 任大遠), 그리고 유창운의 3녀(星山 李廷高)는 『國朝榜目』과 官撰資料에서 찾아 검증할 수 없었다.⁹¹⁾

84) 『晉州姜氏掌令公派世譜』(晉州姜氏掌令公派世譜所, 1984)에서는 장녀의 남편성명이 ‘韓翊箕’였다. 그러나 『五校淸州韓氏大同族譜』(藏MF 35-4587~4590, 履~薄笱)를 확인해 본 결과, 韓如愚의 子 ‘韓鎭箕’의 부인이 姜碩昌의 딸임을 알 수 있었다.

85) 『慶州李氏大宗譜』(慶州李氏中央花樹會, 1987), 446쪽.

86) 『豐川任氏族譜』, 藏MF 35-4395, 62쪽.

87) 『淸州韓氏大同族譜』, 藏MF 35-4590, 臨쪽.

88) 『居昌愼氏世譜』(愼氏世譜大宗會, 1988), 581쪽.

89) 『全州李氏寧海君派譜』, 藏MF 35-4280, 32~33쪽; 『潘南朴氏世譜』2卷(潘南朴氏大同譜所, 1926), 25쪽; 『安東金氏世譜』15卷(安東金氏大同宗約所, 1936), 11~12쪽.

90) 『高靈申氏世譜』3卷(高靈申氏世譜編纂委員會, 1995), 56~57쪽; 『慶州李氏菊堂公派譜』, 藏MF 35-9765~9766, 67쪽.

91)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夫의 집안족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海州鄭氏大同譜』2卷(海州鄭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85), 141~142쪽; 『竹山安氏大同譜』4卷(竹山安氏大宗會, 1999), 77~78쪽; 『光山金氏直提學公派譜』2卷(光山金氏直提學公派譜編纂委員會, 1998), 22~23쪽; 『塔源續譜-楊原君派』, 藏MF 35-2031, 23쪽; 『龍仁李氏大同譜-府使公派』2卷(龍仁李氏大宗會, 1983), 702쪽.

그러나 父系족보에 夫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집안의 딸들이 모두 혼인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8집안의 간택후보자들은 왕비간택에 탈락된 이후 모두 혼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③과 ④항의 범주처럼 간택처자를 추정할 수 없었지만 ①, ②, ③, ④항 모든 범주의 처자들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간택에서 낙선된 처자들이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 없다거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간다는 기존의 설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역대 낙선된 간택처자 가운데에 후궁이 된 처자들이 있었다. 바로 端宗妃 定順王后와 함께 후보자에 올랐다가 淑儀된 후궁들의 경우와 中宗妃 章敬王后와 淑儀로 간택되었다가 후궁이 된 敬嬪 朴氏와 熙嬪 洪氏의 경우였다. 이들 경우를 제외하고 숙종 초까지 간택후보자 가운데에 후궁으로 된 경우는 없었다. 태종과 세종이 왕과 세자의 후궁을 각각 법제화한 이래로 후궁은 정식 간택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성은을 입은 궁녀들이 대부분이었다. 숙종 조에 정식간택절차로 선발된 寧嬪 金氏, 성은을 입어 신분상승된 禧嬪 張氏와 淑嬪 崔氏 등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따라서 숙종의 후궁 가운데에 이번 간택에 참여했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가문의 상대배우자와 혼인했을까? 이때, ‘간택후보자’라는 경력이 그녀들의 혼인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선조 혼인관계로서 성립된 姻族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친족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하여 한 가문의 盛勢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있음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다. 이는 방목의 先系表示가 外祖와 妻父의 並記원칙을 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명문대가들이 당시 그들 나름의 일정한 통혼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유력한 집권층, 곧 일급명족들과의 통혼이 상호의 성세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할 때에는 제휴의 대상으로써 정치적, 신분적으로 자편에 이익이 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권위의 한 과시 방법으로도 일급 명족과의 통혼권에 들려는 노력이 있었다.⁹²⁾

92) 李泰鎭, 앞의 논문(1976), 304쪽.

IV. 간택처자 배우자의 家格

조선조 가문의 格을 결정하는 첫째 기준은 관직이었다. 이는 관직이 정치에 참여하는 자격조건으로서만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시키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었다.⁹³⁾ 그러나 관직이 명문대가의 1차적 요건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벼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명문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흔히 명문대가라 함은 문과 급제자의 수와 고관직의 수행 정도, 국혼의 빈도, 그리고 功勳 등의 조건이 顯祖에서 자손에 이르기까지 盛勢의 계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登科與否·最終官職·功臣冊封·國婚 및 통혼권 등을 중심으로 분석의 대상자인 배우자 집안들의 家格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들 家格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13집안만의 배우자 집안(합40)을 대상으로 登第와 관품을 정리하여 도표화 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배우자집안의 登第와 官品

事例	女	夫	夫의 身上		夫의 家系								합계				
			登第	官品	父		祖		曾祖		高祖		文科	官品			
					登第	官品	登第	官品	登第	官品	登第	官品		堂上	堂下	비고	
1	趙持謙	1女 李明觀	○	×	종4	×		×	종2*	○	정2*	×	정6	1	2	2	4
		2女 李宇春	×	×	종4	×	정6	○	정1	×	*	×	★정7*	1	1	2	3
		3女 李宜復	○	×		×		○	종4*	○	종2*	○	종2	3	2	1	3
		4女 鄭錫敷	○	×	종8	×	정3	×	정3	○	정1	○	정3	2	4	1	5
		5女 崔尙顥	×	×	★정5	×	정3	×	정3	×	종4*	○	종5*	1	2	2	4
2	朴泰延	1女 黃瑞河	×	×	종2*	○	정2	×	종2*	×	*	×	종4*	1	3	1	4
		2女 李宜壽	○	×	종6*	○	종5	×	×	×	종2*	×		1	1	2	3
3	尹攄	1女 李汝珪	×	×		×	종2	×	*	×	*	×	종2	0	1	0	1
		2女 許晁	×	×		×	*	○	*	○	종3	×		2	1	0	1
		3女 安益舒	×	×		○	종3*	×	종4	×	★정5	×	종8(武)	1	0	3	3
4	曹夏卿	1女 李浮命	×	×	종9	○	*	×	*	○	정3*	○	종1*	3	2	1	3
		2女 李壽涵	○	×	종6	○	종2	×	*	×	정(武)*	▲	정2	2	3	1	4
5	朴緞	1女 慶文會	○	×		×		×	×	×	종5	○	*	2	0	1	1
		2女 吳遂倫	×	×		×	★정5	○	정3	○	정3*	×		2	2	0	2
		3女 李宇全	×	×	★정3	×		×		×		×	종4	0	0	1	1
6	安相萬	1女 李恒坤	×	×	종9*	○	정5*	○	정1	○	정2*	×	*	3	2	2	4
		2女 李翼明	○	×		×	종9*	○	종2	×	종4*	×	*	2	1	2	3
		3女 申喜集	×	×	종6	×	정3	○	정1	×	정3*	×	정3*	1	4	1	5

93) 홍순민, 「肅宗初期 政治構造와 換局」, 『韓國史論』, 제15권(1986), 142쪽.

7	鄭紳場	1女 尹志益	○	×	종4	×	정5*	○	정4*	×	종4*	○	정5*	3	0	5	5
		2女 洪遠度	○	×	종7	×	종4	○	정2	×	종3*	×	종4*	2	1	3	4
		3女 李昌彦	×	×	★정5	○	종3*	×	종5*	×	★정5*	×	종6	1	0	4	4
8	尹挾	1女 金錫翼	×	×	종2*	×	정1*	×	*	×	*	×	종5*	0	2	1	3
		2女 金盛大	×	×	종6*	○	종2*	×	종5*	○	종2*	×	정3	2	3	2	5
		3女 李涉	×	×	*	×	종5*	×	종5*	○	정1	×	종4*	1	1	3	4
9	安後泰	1女 李徵緝	○	×	정3	×		○	정1	×	종5*	○	정9*	2	2	2	4
		2女 金錫蕃	○	×		×	★정5	×	종6*	×	*	×	*	0	0	1	1
10	崔錫鼎	1女 李聖輝	○	×	종9	○	정3*	○	정1	×	종4*	×	종6*	2	2	3	5
		2女 李景佐	×	×		×	종2*	○	종2*	×	정3*	○	정3	2	4	0	4
		3女 尹尙愼	×	×		×	종5	○	정1	○	정2	○	정3	3	3	1	4
11	洪澤普	1女 趙明彬	×	×	종6	×	정3	○	정3	○	정2	○	종2*	3	4	1	5
		2女 徐命倫	×	×		○	정1	○	정3*	×	종3*	×	정2	2	3	1	4
		3女 尹滢	×	×	종6*	×	*	×	종4*	○	종1	○	종2	2	2	2	4
12	朴世采	1女 宋淳錫	×	×	종6	×	종2	×	정1*	×	종9*	×	종5*	0	2	3	5
		2女 申聖夏	×	×	정3*	○	정1	×	종6*	×	정2*	▲	정1	1	4	1	5
		3女 李德明	×	×	정3*	×	종9	○	정2	×	종4*	×	*	1	2	2	4
13	沈益善	1女 李泳	×	×	종5	×		×	*	○	정1	○	정1	2	2	1	3
		2女 黃夏民	×	×	종6	×	*	○	종2*	○	정2*	○	정5*	3	2	2	4
		3女 趙泰采	×	○	정1	×	종4*	○	정2*	○	종2*	×	*	3	3	1	4
		4女 洪禹瑞	○	○	정3	×	종3*	○	종2*	○	종2*	×	*	3	3	1	4
		5女 李漢章	○	○		○	정(武)*	○	정5*	○	종6*	×	종2	4	2	2	4

* 추증 ▲무과 ★품계

위의 <표 5>를 통하여 이들의 전체적인 특징부터 살펴보면 인물들이 대부분 追贈 되고 있다. 추증은 宗親 및 文官·武官으로서 實職 二品 以上인 자의 父祖 三代에 게 부여된 것으로 지속적인 권력층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出仕路에 대한 통계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눈에 띈다. 문과급제자의 비율이 가문별 대략 2명(70/40≃1.75)을 배출하고 있는데 반해 관직자의 비율은 약 4명(143/40≃3.58)으로 산출되고 있었다. 문과 입격자와 관직자의 비율이 1:2로 나타난다는 것은 非文科出身者가 가문별 2명씩 차지하는 것으로 비문과 출신자들이 대부분 문음으로 출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음서는 조선조 지배층의 초입사로의 한가지로 文武科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등용문이었다. 이들에게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은 지배계층에 대한 특권의 혜택을 부여해 준 것이다. 蔭職除授 대상이 2품 이상의 자손이나 공신들에게 한정하여 주어졌다는 점⁹⁴⁾ 이 같은 사실을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조선조 문과에 급제하고 현

94) 『經國大典』 卷1, 吏曹 取才 蔭子弟條.

달한 명문거족들조차 음서가 초입사로의 중심이 되었고, 공신과 재상을 많이 배출한 가문일수록 음서율과 출사율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⁹⁵⁾

이와 같이 官界에 들어가는 입사료에 대한 특전이 국가로부터 보장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지배층 가운데에서도 극소수 고관직의 문음자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핵심가문의 자손들로 재능과는 관계없이 가문의 혈통만으로도 관직획득에 있어 유리한 高地를 차지할 수 있었다.⁹⁶⁾ 이는 음서가 가계와 직결되면서 영위되었고, 戚族家門은 물론 문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가문도 관직을 획득하고 관직과 가문의 특권을 계승하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가문별 인물들은 과거제와 음서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나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었을까. 단편적인 수치상의 통계로 이들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조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당상관과 당하관의 비율이 가문별로 각각 2명(78/40≒1.95)과 1명(65/40≒1.62)씩 임을 감안해 본다면 대략이나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엘리트 집단이었음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표 5>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최고직인 의정부 三政丞을 역임한 인물도 李尙眞·李厚源·申玩을 비롯하여 14명이나 되고, 黃欽·李淹·趙昌遠·李夢禹 등 8명은 왕권의 지지기반인 병권을 쥐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로써 볼 때 13가문과 통혼권을 이루고 있는 40집안은 대체로 지배계층의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분석의 주목적인 家格의 윤곽을 알아보기 위해 간택 배우자 가문의 경우를 직접 보기로 하겠다. 이들은 자체에서 우열의 차가 따로 있어 개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야만 그 성격 규정이 보다 확실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삼기보단 최종 삼간택에서 낙선된 4명의 후보자(최석정·홍택보·박세채·심익선의 딸)에 국한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全州李氏]

최석정의 장녀와 혼인한 李聖輝(1670~1714, 麟卿)는 세종의 5남 廣平大君 李璵(1425~1444)의 9대손이다. 증조 李郁은 성혼의 문인으로 진주의 忠愍祠에 제향된 인물이다. 이 집안의 起興者는 祖 李厚源과 父 李選이다. 이후원(1598~1660,

95) 韓忠熙, 「朝鮮初期 蔭敍의 實際와 役割: 樞要職歷任者와 鉅族出身仕官者의 歷官分析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91卷(1995), 86쪽.

96) 李成茂, 『朝鮮初期兩班研究』(一潮閣, 1980), 44~49쪽.

士晉)은 인조반정의 공으로 靖社3等功臣이 되었고,97) 효종 말에는 우의정에 오른 인물이었다.98) 게다가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수습하는 데에 앞장섰고,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에는 摠戎使로서 변란에 임하는 등 당대 권력층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勳戚이자 貴戚으로서 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송시열과 교류하여 士類의 推重을 받았으며99) 사후에 廣州 秀谷書院에 제향 되었다. 이어 이조참판 李選(1631~1692, 芝湖)은 송시열의 문인이었으나 사림들로부터 여러 차례 탄핵을 받다가 귀양을 갔음에도100) 명문세족들과 맺고 있는 통혼으로 훈척세력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예컨대 그는 이조판서 尹絳의 사위이자 金錫胄·朴泰輔의 妻兄이었으며, 崔錫鼎·閔惟重과는 사돈지간이었다. 이 당시 최고 집권 권력층에 있었던 坡平尹氏·淸風金氏·潘南朴氏·全州崔氏·驪興閔氏 가 문간의 통혼은 이 집안의 정치적 비중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楊州趙氏]

홍택보의 맏딸과 혼인한 趙明彬(1669~1700, 士克)은 조선 초 대제학을 역임한 趙末生(1370~1447, 謹初)의 11대손이다. 조말생에 의해 성세를 이룬101) 이 가문의 지위는 仁祖朝에 국구가 된 趙昌遠에 의해 더욱 확고해진다. 음직으로 출사한 그는 위 혼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府使를 지내다가 혼인을 계기로 정1품인 領中樞府事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의 영달과 함께 바로 이 시기에 登科者가 다수 배출되었다. 선조 23년에 조창원의 父 趙存性이 급제한 것을 기점으로 趙啓遠·趙龜錫·趙晉錫·趙胤錫·趙嘉錫·趙師錫 등 4대 14명이 잇따라 登第하였다. 조명빈은 바로 조창원의 증손으로 원래는 刑曹判書 趙泰東(1649~1712, 聖登)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나 趙泰相에게 입양되었다.102) 생부 조태동은 윤증의 문인으로 홍문

97) 『仁祖實錄』卷3, 仁祖 1年 閏10月 18日 甲辰條.

98) 『孝宗實錄』卷19, 孝宗 8年 9月 2日 辛丑條.

99) 『顯宗改修實錄』卷2, 顯宗 1年 2月 4日 己丑條. 그의 졸기.

100) 『肅宗實錄補闕正誤』卷24, 肅宗 18年 2月 1日 辛巳條. 그의 졸기.

101) 태종은 讓寧大君의 허물에 대해 그와 독대하였고, 『太宗實錄』卷35, 太宗 18年 3月 6日 丙辰條) 그의 죽음에 2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弔喪과 賻儀, 致祭를 하며, 官庖로 장사지냈다(『世宗實錄』卷116, 世宗 29年 4月 27日 戊午條). 이처럼 그와 후손들에 대한 국왕들의 신임은 혼인관계로서 구체화되었다. 즉 조말생의 아들 趙璿이 태종의 駙馬로, 그의 玄孫인 趙無疆이 成宗의 부마로 취해지는 혼사가 잇따랐던 것이다.

102) 『韓國系行譜』, 1437~1441쪽.

록에 올랐고, 대사간·대사성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었다. 한편 좌의정을 역임한 趙泰采를 비롯하여 좌의정 趙泰耇·좌의정 趙泰德 등은 모두 조명빈과 당내간 친척들로, 相臣과 국구를 배출하면서 집안의 성세가 이루어졌다. 가문 지위의 융성과 때를 같이한 이 같은 登科者의 다수 출현과 고위 관직자 배출은 결코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平山申氏]

박세채의 次女와 혼인한 申聖夏(1665~1736, 聖甫)는 文僖公派系이다. 무인집안으로 문희공 申槩가 태조 때에 좌의정을 역임하면서 집안의 성세가 이루어졌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 가문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 이는 신성하의 고조 申景禎(1575~1643)이었다. 그는 靖社1等功臣으로¹⁰³⁾ 영의정에 올랐으며 인조묘정에 배향된 인물이었다.¹⁰⁴⁾ 아우 申景裕(1581~1633, 子寬)와 申景禔(1590~1643, 子精)도 무과급제이후, 靖社2等功臣에 책록되었는데 당시 이들 삼형제는 인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 한편 그들의 백부 兵曹判書 申礪(1541~1609, 伯俊)은 이 집안에서 보기 드문 무과급제자로 扈聖2等功臣에 책록되었고, 신경진의 아들 申堉도 父 형제들과 함께 靖社3等功臣에 녹훈되었다.¹⁰⁵⁾

이후 이 가문의 最顯達者는 신성하의 부 申玩(1646~1707, 公獻)이었다. 그는 숙종대에 領相에 올랐던 인물로, 경신대출척 때에 남인 權大運과 閔熙 등을 공격하였고, 禧嬪張氏의 처벌완화를 주청하는가 하면 북한산성의 축성을 건의하는 등 당대 정치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박세채와 신완 가문과의 통혼은 師弟간의 교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러한 친분이 이들 가문에 중첩된 혼인 양상을 낳게 되었다. 즉, 박세채의 4남 朴泰晦(1658~1734, 用章)는 申汝拭의 사위이자 신완의 妹弟가 되었다. 이는 양 가문의 盛勢補完의 지속적 의미를 더 강하게 되는 구실이 되었다.¹⁰⁶⁾ 이 집안 성쇠의 열쇠는 立功으로 인한 병권장악이었다. 정치권력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병권은 여타 관직과는 달리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이 농후한데 이를 장악하고 있는 이 집안이야 말로 왕권의 지지기반이

103) 『仁祖實錄』 卷3, 仁祖 1年 閏10月 18日 甲辰條.

104) 『孝宗實錄』 卷6, 孝宗 2年 6月 14日 己未條.

105) 『仁祖實錄』 卷3, 仁祖 1年 10月 18日 甲辰條.

106) 李泰鎮, 앞의 논문(1976), 305쪽.

두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全州李氏]

심익선의 5녀와 혼인한 李漢章(1666~1697, 天卿)은 成宗의 4남인 完原君 李燧(1480~1509)의 7대손이다. 이수로부터 3대 順興君 李夢禹에까지 종친부의 작위를 받았기 때문에 仕宦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왕실과 至親에 있었던 이들이 최고의 명예와 부를 국가로부터 보장 받았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이한장의 증조 李璘(1562~1607, 聰叔)은 1605년(宣祖 38)에 문과 급제하였는데, 이 시기에 과거급제자가 처음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가문지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登第와 出仕는 자손들의 出世에도 큰 배경으로 작용했던 감이 있다. 子 李尙質(1597~1635, 子文)과 孫 李憲(1628~1679, 道村)이 門蔭으로 仕路하였지만 이후 문과에 장원급제하는 개인적 능력을 보였다. 이들 父子의 재능은 관직획득의 유리한 高地를 차지하게 되어 李尙質은 湖堂錄에 올랐고, 李憲은 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이한장의 조부 이상질은 權輶의 문인이며 한때 元宗을 宗廟에 추송한 일로 鐘城에 유배되었지만¹⁰⁷⁾ 곧바로 사면되었다. 이는 당시 宋翼彌·成渾·이이의 문인인 鄭擘(1563~1625, 時晦)의 사위이자 大提學 趙錫胤의 사둔지간으로 서로간의 통혼이 相互盛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상에서 간택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 가운데에 최종 삼간택에서 탈락된 4가문의 배우자 집안만을 집중 고찰함으로써 많은 가문의 설명을 생략하였다. 이들 가문의 성장과정에는 규모에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위에 예로 든 4가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 17세기 후반에 성쇠를 떨친 일급명가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때 이들 가문이 가문 성세를 이룰 수 있었던 요건들은 문과급제자와 고관직 배출, 공신, 국훈, 그리고 명문가문과의 통혼권 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간택처자’라는 경력이 과연 그녀들의 혼인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를 언급하여야 하겠다. 필자가 말한 혼인로의 영향이란 ‘간택처자’라는 타이틀이 그녀의 同氣들에 비해 명문대가와 그에 걸 맞는 유능한 배우자와 혼인하였는가 아니면 정반대의 배우자와 혼인하였는가 라는 단편적인 의문이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아무런 변수로 작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표 5>을 비교해 보더

107) 『仁祖實錄』 卷30, 仁祖 12年 閏8月 14日 丁酉條

라도 간택처자의 배우자들이 동기들의 배우자 집안들 보다 현저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배우자 4명만을 비교분석해 보아도 앞서 언급한 事情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V. 맺음말

본고는 1681년(숙종 7)에 이루어진 간택처자들에 관한 연구를 몇 가지 측면에서 시도하여 보았다. 이 논문이 家系·婚姻關係에 대한 煩細한 작업으로 오히려 산만한 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시된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제까지 검토한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서 이 글을 끝맺으려고 한다.

첫째, 간택후보자들의 가문이 어떠한 집안이었는가. 1681년(숙종 7)에 치러진 세 차례 간택에서 숙종의 계비로 揀選된 민유중의 딸을 제외한 15가문 18집안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가문은 모두 당대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다. 고려 이래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국왕과의 외척세력이나 勳功 등을 통하여 왕실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지배계층들이었으며 계속적으로 顯官(高位官)을 배출하여 자신의 문벌적 지위를 고수하려 했던 명문대가들이었다. 이는 성리학에 근거한 유교적 가족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했던 왕실에서 엄격한 가법의 교육을 받고 자란 명문대가의 처자를 간택한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더 나아가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운명을 같이 했던 인물들의 有力한 가문과 學緣 내지 地緣 등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며 특히 통혼을 통해서 가문 간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가문들은 경신환국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집권세력으로 남인세력은 단 한명의 후보자도 간택되지 못했다. 이는 왕비가 집권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로서 王妃位가 집권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1·2차 揀選에 뽑힌 처자들이 최종 선발에 낙선된 이후 혼인을 하였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종법의 정착과 가부장권의 강화라는 조선사회의 가족

이념으로 인해 낙선된 간택처자들의 혼인가능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이다. 이는 종법제 가족윤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상층부 여성들에게 内外法の 행동규제를 강요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1·2차 간택후보자들 모두 혼인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③, ④항목의 경우처럼 간택후보자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었지만 이들 15가문 18집안의 딸들이 모두 혼인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간택에서 낙선된 처자들이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 없다거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간다는 기존의 설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다. 단지 왕비 혹은 왕세자빈으로 결정된 처자 이외에 처자들이 후빈이 된 경우가 단종과 중종 두 경우뿐임을 염두 해 볼 때 기존의 설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즉, 유교국가인 조선사회에서 국혼에서의 간택 낙선이 혼인금지사유조건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편적 통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설에 수정이 요구되는 바이다.

셋째, 간택후보자들이 과연 어떠한 가문의 상대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는가. 이때 ‘간택후보자’라는 그녀들의 이력이 혼인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들 가문의 성장과정에는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당시 17세기 후반에 성쇠를 떨친 일급명가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 집안들은 그 출신기반은 관료집단에 두고 있으면서, 권력기반은 국왕과의 외척관계나 勳功 등을 통하여 왕권에 두고 있는 지배계층들인 동시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층이었다. 이로써 볼 때 13가문과 통혼권을 이루고 있었던 40집안은 대체로 권력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낙선된 처자들은 ‘간택후보자’였다는 이력이 이후 그들의 혼인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본고는 17세기 후반의 揀擇낙선자들을 다룬 사례연구로써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름을 시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택 처자들에 대한 각 시기의 혼인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아울러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 『經國大典』(<http://k5000.nurimedia.co.kr/intro.asp>).
- 『韓國系行譜: 天·地·人』. 서울: 寶庫社, 1992.
- 『國譯國朝人物考』.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2005.
- 『羅州郡誌: 羅州郡』. 나주: 羅州君誌編纂委員會, 1980.
- 姜世求, 「姜希顔의 《養花小錄》에 관한 一考察」. 『韓國史研究』 60, 한국사연구회, 1988, 37~56쪽.
- 金光哲, 『고려후기 세족층연구』. 부산: 동아출판사, 1991.
- 김명길, 『樂善齊 周邊: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5)』. 서울: 중앙일보사, 1977.
-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 서울: 김영사, 2003.
-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研究』. 서울: 一志社, 2000.
- 변원림, 『조선의 왕후』. 서울: 일지사, 2006.
- 孫燦植, 「北窓 鄭謙 研究-生涯와 思想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29권, 民族語文學會, 1990, 119~146쪽.
- 신명호, 『조선의 왕』. 서울: 가람기획, 1998.
-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서울: 효형출판, 2001.
- 신병주, 「17세기 후반 소론학자의 사상」. 『역사와 현실』 13권, 1994, 115~137쪽.
- 윤정란, 『조선의 왕비』. 서울: 이가출판사, 2003.
- 李美善, 「肅宗과 仁顯王后의 嘉禮考察」. 『藏書閣』 14집, 2005, 135~172쪽.
- 이상식, 「肅宗 初期의 王權안정 책과 庚申換局」. 『朝鮮時代史學報』 33권, 2005, 113~145쪽.
- 李成茂, 『朝鮮初期兩班研究』. 서울: 一潮閣, 1980.
- 이순구, 『朝鮮初期 宗法의 수용과 女性地位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 李正浩, 「高麗後期 安東權氏 가문의 經濟的 基盤: 權仲時-權守平계열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1권, 2005, 333~366쪽.
- 李泰鎮, 「15세기 후반기의 ‘巨族’과 명족의식: <東國輿地勝覽>人物條의 分析을 통하여」. 『韓國史論』 3권, 1976, 229~323쪽.
- 李海濬, 「17세기 중엽 坡平尹氏 魯宗波의 宗約과 宗學」. 『충북사학』 11·12합집, 2000, 331~350쪽.
- 鄭杜熙, 『朝鮮初期政治支配勢力研究』. 서울: 一潮閣, 1983.
- 정재서, 「《溫城世稿》를 통해 본 朝鮮朝 丹學波의 이념적 性格」. 『한국정신과학회지』 1권 2호, 1997, 25~29쪽.
- 鄭在勳, 『朝鮮初期 王室昏과 王室後裔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4.
- 趙峻皓, 『朝鮮 肅宗~英祖代 近畿地域 老論學脈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池敎憲, 『韓國思想家의 새로운 發見(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韓忠熙, 「朝鮮初期 蔭絃의 實際와 役割: 樞要職歷任者와 鉅族出身仕官者의 歷官分析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1권, 1995, 59~98쪽.

홍순민, 「肅宗初期 政治構造와 換局」. 『韓國史論』 5권, 1986, 129~199쪽.

*가문별 족보자료는 생략하므로, 주를 참조바람.

국 문 요약

본고는 1681년(숙종 7) 국왕의 嘉禮에서 뽑힌 揀擇處子들을 다룬 사례연구로서,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을 강조하는 조선사회에서 간택낙선 이후, 간택처자들의 혼인여부를 추적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최종선발 된 閔惟重의 딸을 제외한 간택후보자 15가문 18집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각 가문별 族譜자료를 활용하였다.

1681년(숙종 7) 국왕의 가례는 庚申大黜陟 직후 당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진행된 국혼이었다. 간택에 참여한 가문들은 경신환국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집권세력으로, 당대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다. 先代부터 高位官을 배출시키면서 자신의 문벌적 지위를 고수하였고, 유력한 가문과 學緣 또는 地緣 등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명문가문간의 통혼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을 확고히 하였다.

1·2차 간택후보자들의 혼인여부를 족보자료를 활용하여 추적해 본 결과, 이들은 최종 왕비선발에서 낙선된 이후에 모두 혼인하였다. 이는 간택에서 낙선된 처자들이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 없다거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간다는 기존의 설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최종간택에서 탈락된 간택처자들은 ‘간택낙선후보자’라는 이력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家格과 걸맞은 권력상층부의 일급명가들과 혼인하였다. 이는 ‘간택후보자’였다는 이력이 그들의 혼인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투고일 : 2007. 4. 11.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嘉禮(Garye: the suspicious ceremony), 揀擇處子(Gantaekcheoja: the candidates of the king's spouse), 閔惟重(Min Yujung), 族譜(genealogy), 落選(dropped maidens in selecting of king's spouse), 家格(family standing).